

	장 애 학 생 지 원 규 정	규정번호	KTC-E-07	1/4
		제정일자	2011.05.18	
		개정일자	2016.12.19	
		관리부서	교 학 처	

강원관광대학 장애학생지원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및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29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수·학습 환경을 제공하고,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“장애” 라 함은 교수·학습활동 및 대학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신체 및 감각기관의 기능 이상 또는 기능 저하를 말한다.
- ② “장애학생” 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관계기관에 장애인으로 등록(장애인 등록증 소지자)된 학생 및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학생 모두를 말한다.
- ③ “교육·복지” 라 함은 장애학생의 교수·학습 환경의 개선 및 대학생활에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.

제 3 조(장애학생에 대한 배려) 대학생활 및 후생복지 지원에 있어서 장애학생이 차별 받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.

제 4 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교에서 수학하는 장애학생에게 적용한다.

제 2 장 학생관리 및 학습지원

제 5 조(신상자료 관리) ① 장애학생지원 업무는 교학처에서 관장하며, 장애학생에 관한 신상자료 관리를 총괄한다.(개정 2016.12.19)



장애학생지원규정

규정번호	KTC-E-07	2/4
제정일자	2011.05.18	
개정일자	2016.12.19	
관리부서	교학처	

② 업무관장부서에서는 관련 부서 간 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매 학기마다 장애재학생명부를 작성하여 관련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6 조(신고) 장애학생은 입학 직후 소속 학과장에게 장애등급과 장애유형을 신고하여야 하며, 재학 중 장애정도가 완화(심화)되어 유형, 등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음 학기 개강 전까지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.

제 7 조(우선 수강신청) ① 장애학생이 소속된 학과는 중증장애, 거동 불편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이 우선 수강신청을 희망할 경우 개별 상담과 관련부서 협조를 통해 우선 수강신청의 기회를 제공한다.

② 우선 수강신청은 강좌별 수업운영 방식, 학생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.

제 8 조(장애학생 정보 제공) ① 교학처는 효율적인 교수·학습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이 수강하는 강좌의 교·강사에게 장애학생의 장애유형, 장애정도, 장애유형별 유의사항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(개정 2016.12.19)

② 장애학생에 관한 정보를 교·강사에게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, 해당 교·강사에게는 정보보호 의무를 숙지시켜야 한다.

제 9 조(학점등록) 장애학생이 졸업소요학점을 일부 취득하지 못하였을 경우 학점등록을 우선 신청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해서는 학칙 제39조의 규정을 따른다.

제 10 조(장학금 지급) 장애학생에게는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른다.

제 11 조(봉사활동 인정) 장애학생 도우미 봉사활동은 사회봉사활동으로 인정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12 조(기자재 확보 및 활용 지원) 장애학생 관장 부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장애학생 학습활동에 필요한 기자재를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활용교육을 하여야 한다.



장애학생지원규정

규정번호	KTC-E-07	3/4
제정일자	2011.05.18	
개정일자	2016.12.19	
관리부서	교학처	

제 3 장 대학생활 지원

제 13 조(동아리 활동) 장애학생 관장부서는 장애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며 이에 필요한 시설·집기 확충 업무를 담당한다.

제 14 조(장애이해 프로그램) 장애학생 관장부서는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예방과 비 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특강, 장애체험 등 장애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.

제 15 조(경력개발) 장애학생 관장부서는 장애학생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진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교내·외 부업, 산업체 현장실습 등 장애학생 진로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한다.

제 4 장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

제 16 조(설치) 장애학생학습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 17 조(구성) ① 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당연직 위원 4인과 3인 이내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하되, 교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.(개정 2016.12.19)

② 위원은 교학처장, 기획처장, 행정지원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임명직 위원은 전임교원 또는 7급 이상의 일반직원 및 외부전문가 중에서 3인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(개정 2016.12.19)

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장애학생 관장부서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 18 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장애학생의 교육에 관한 사항
2. 장애학생의 복지에 관한 사항



장애학생지원규정

규정번호	KTC-E-07	4/4
제정일자	2011.05.18	
개정일자	2016.12.19	
관리부서	교 학 처	

- 3. 장애학생의 시설 및 설비지원에 관한 사항
- 4. 장애학생 관장부서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
- 5. 장애학생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
- 6. 장애학생 인정에 관한 사항
- 7. 기타 장애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 및 장애학생 학습지원에 관련된 제반 사항

제 19 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20 조(관계부서의 협조)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 21 조(기타)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